

# 2018

## 기업규제애로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 2018 기업규제애로 개선활동 |



울산상공회의소



# ◆ 목 차 ◆

## □ 건의사업 활동

I. 기업애로 발굴 활동 .....	1
II. 기업애로센터 운영 .....	3
III.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	5
IV. 혁신성장 옴부즈만 .....	6

## □ 건의 내용

### I. 건의 실적

1. 건의 추진현황 .....	9
2. 반영 건의 세부내용	
(1) 對이란 수출대금 회수 불가 관련.....	10
(2)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요청.....	11
(3) 노동현안(근로시간 단축 관련).....	12
(4) 노동현안(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13
(5) 국가산단 내 레미콘 생산재개 협조 요청.....	14
(6) 부울경 비즈니스 라운지 환경개선 요청.....	15
(7) LNG복합발전소 건립 협조 요청.....	16
(8) 폐기물인 굴뚝 검뎅이(분진) 반출 협조 요청.....	17
(9) 폐기물 재활용 처리에 대한 세부기준 수립 요청.....	18
(10)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조속 지정 요청.....	19
(11) 공공입찰 참가 제한 유예 요청.....	20
(12)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요청.....	21
(13) 울산공항 국내선 노선감편 계획 철회 협조 요청.....	22
(14)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 개선 요청.....	23
(15) 석유화학공단 통합파이프라인 구축사업 정부 지원 요청.....	24
(16) 조선사 내 협력사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요청.....	25
(17)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요청.....	26
(18) 조선기자재기업 금융 유동성 확대 지원 요청.....	27
(19) 고용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28

### 3. 검토중 건의 세부내용

(1,2) SDN LIST 발표 시 이란 항만운영자의 이용 가능한 항만 공개 협조요청 및 이란 목적항구 제재대상 리스트 제외 관련 협조.....	29
(3) 노동현안 건의(통상임금 범위 관련).....	30
(4) 수소충전소 설치 입지 규제완화(학교로부터 이격거리 완화(200m→25m)).....	31
(5) 수소충전소 설치 입지 규제완화(공동주택, 병원, 어린이집 이격거리 완화(50m→25m)).....	32
(6) 일반 거주지역 내에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	33
(7)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에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	34
(8) 다양한 방식의 수소충전 인프라 허용.....	35
(9) 집단에너지사업자 예비전력요금 면제 협조.....	36
(10) 나라장터 입찰공고 시 제한경쟁입찰제(지역제한) 시행.....	37
(11)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공장용지 확보 요청.....	38
(12) 공장설비 증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계획관리).....	39
(13) 공장설비 증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공업).....	40
(1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요청.....	41
(15) 울산 관내 폐기물 매립시설 인프라 확충.....	42
(16) 원전지원금 적용지역 확대 요청.....	43
(17)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요청.....	44
(18)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요청.....	45
(19) 회비부과 관련 국세청 매출자료 입수방안 제도화.....	46
(20) 상의 회원사 자격 완화 관련 상의법 개정 검토.....	47
(21) 근로시간 감축(8시간→6시간)을 통한 5조 4교대 시행.....	48
(22)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직급 상향 요청.....	49
(23) 중소·중견기업 기준 요건 완화 요청.....	50
(24) 울산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설립 요청.....	51
(25) 서울산세무서 설치 요청.....	52
(26)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	53
(27) 지방세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재산분) 중과대상에서 제외 요청.....	54
(28)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활용.....	55
(29) 차량 운행제한 규정 개선 요청.....	56
(30,3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 및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요청.....	57
(32)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요청.....	58
(33) 사내하청 문제 재검토 요청.....	59
(34) 뿌리산업 지원 위해 매곡산단에 금형산업 글로벌 지원센터와 공동물류센터 구축 지원 요청.....	60

(35) 동남권 특장차 인증 인프라(동남권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구축 지원 요청	61
(36) 중소화학기업을 위한 'K-Reach 대응센터' 설치 요청	62
(37) 정밀화학기업도 뿌리산업으로 지정 지원 요청	63
(38) 울산청년일자리센터 건립 지원 요청	64
(39) 소상공인 대출 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확대 요청	65
(40)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66
(41)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요청	67
(42) 지역 전문건설산업 활성화 요청	68

**※ 탐원서(2건) 제외**



2018년 기업 규제애로 개선 및 건의 사업보고서

## **□ 건의사업활동**



## I. 기업애로발굴활동

### 가. 기업체 방문

#### < 회장단 현장방문 및 간담회 >

(1) (주)삼화테크 임직원과의 간담회

- 일시 : 2018. 1. 17(수)

(2) SK가스(주) 임직원과의 간담회

- 일시 : 2018. 1. 25(목)

(3) (주)유니드 임직원과의 간담회

- 일시 : 2018. 4. 17(화)

(4) (주)서연이화 임직원과의 간담회

- 일시 : 2018. 5. 4(금)

(5)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와의 간담회

- 일시 : 2018. 8. 16(목)

(6) 울산알루미늄(주) 현장방문 간담회

- 일시 : 2018. 10. 24(수)

(7) 현대일렉트릭(주) 임직원과의 현장방문 간담회

- 일시 : 2018. 11. 7(수)

#### < 임직원 평생전담제 방문 >

(1) 방문업체 수 : 연간 469개사

(2) 방문목적

-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현장방문으로 상시파악
- 대회원서비스 사업홍보 및 신규 사업 발굴
- 창립기념일 축하 등

## ※ 관련기사 및 현장사진

<p><b>울산알루미늄(주)</b></p>  <p><b>울산상의. 울산알루미늄 방문</b>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 차의환 부회장은 24일 울산알루미늄(주)을 방문해 제리퀴 대표이사 사장과 마사히사사이토 대표이사 부사장, 박종민 광장장과 알루미늄업계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p>	<p><b>현대일렉트릭(주)</b></p> <p>울산상의, 현대일렉트릭엔에너지시스템(주) 협장방문</p> <p><b>지역경제 가치 극대화 방안 머리 맞대</b></p>  <p>울산상공회의소 차의환 부회장은 7월 현대중공업그룹 전기·전자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 전문기업인 현대일렉트릭엔에너지시스템(주) 정명립 대표이사 사장을 방문하고 경기 변동과 업계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명립 대표이사는 “현대중공업 분사 가치에 대한 영향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많았고, 조선업계 불황도 장기화하면서 일감 부족과 경영난에 따른 조치들을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박 시장의 회복 등 긍정적 요인에도 업사이야기 어려움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보전적 경쟁과 노하우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상의 제품,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 위기를 잘 극복하겠다”고 맛보았다.</p> <p>울산상공회의소 차의환 부회장은 7일 현대일렉트릭엔에너지시스템(주) 정명립 대표이사 사장을 방문하고 경기 변동과 업계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p> <p>“수 있다”고 말했다. 차의환 부회장은 “다례운 상대지만 현대중공업 그룹이 시장 변화에 맞춰 차별화한 기술경쟁력으로 최근 LNG선 수주에 특보와 함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현대일렉트릭도 둘째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정 대표이사는 주50시간 도입과 편리근무제를 비롯한 산업계에 적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단체적으로 진행되도록 상의가 역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p> <p>김규신 기자</p>
<p><b>SK가스(주)</b></p> 	<p><b>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b></p> 

## 나. 경영애로 조사

- (1) 2018년 상반기 기업애로 조사(2/26~3/9)
- (2) 2018년 하반기 기업애로 조사(10/8~10/26)

## 다. 기업관련 단체 참가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울산총무부서장 협의회</li> <li>(3) 온산총무부서장 협의회</li> <li>(5) 석유화학공단 총무부서장협의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대기업총무부서장 협의회</li> <li>(4) 울산공장장협의회</li> <li>(6) 주요 회원사 부서장 간담회</li> </ul> |
|---|--|

## II. 기업애로센터 운영

기업의 편에서  
기업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기업불편사항,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경제조사팀

TEL: 228-30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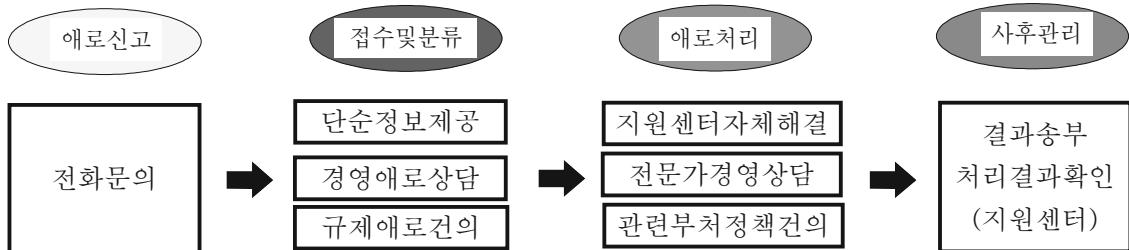
FAX: 271-2116

접수메일: research@ucci.or.kr

### ◇기업애로 종합 지원센터

기업애로 종합지원센터는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건의 및 진정활동을 하는 기업민원 창구입니다.

#### ● 처리절차



#### ● 경영정보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정보 제공

### ◇대한상의 (전문상담을 통한 신속한 애로 해결)

- 코참경영상담센터 : 1600-1572
- 상담분야 : 세무/회계, 인사/노무, 무역/관세, 법률/법무, 창업/경영, 특허



## 기업경영애로요인 조사표

제 목			
관련법령 (조항명시)			
현황 및 문제점 (필요시 사례 포함)			
건의요망사항			
담당자 연락처	업체명		부서/직위
	성 명		전 화
	E-mail		팩 스

### III.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 가. 설치배경

- 기업현장의 애로와 국민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공동으로 2013년 9월 12일 ‘민관합동규제 개선추진단’을 발족
- 규제개선추진단은 민간의 시각에서 기업 현장 곳곳에 산재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민관이 함께 신속히 개선해 나가는 현장밀착형 조직

#### 나. 조직도



#### ◇ 규제개선 과제 상시 접수

- ▶ 규제개선추진단 홈페이지 : <http://www.smartregulation.or.kr>
-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18층  
전화 : 02-6050-3366 / 팩스 : 02-6050-3350

## IV. 혁신성장 옴부즈만

# “혁신성장 옴부즈만” 안내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이 혁신 활동과정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발굴·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정부와 현장을 담당하는 업계 간 팀플레이와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는 더 높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 ▶ 옴부즈만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기업의 혁신 관련 규제·애로뿐만 아니라 지원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합니다.

- ① 기업의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조사
- ② 기업의 혁신과 투자 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과제 발굴
- ③ 기업의 혁신과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예산 지원과제 발굴
- ④ 발굴·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 기업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기업·전문가 등의 건의과제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해결→점검'하는 상시 기업애로 해소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 추진성과를 점검하겠습니다.



### ▶ 위치 및 연락처

주 소 :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7층 혁신성장옴부즈만지원단  
연락처 : 02-6050-1552~3

2018년 기업 규제애로 개선 및 건의 사업보고서

# □      건      의      내      용



## I. 건의 실적

### 1. 건의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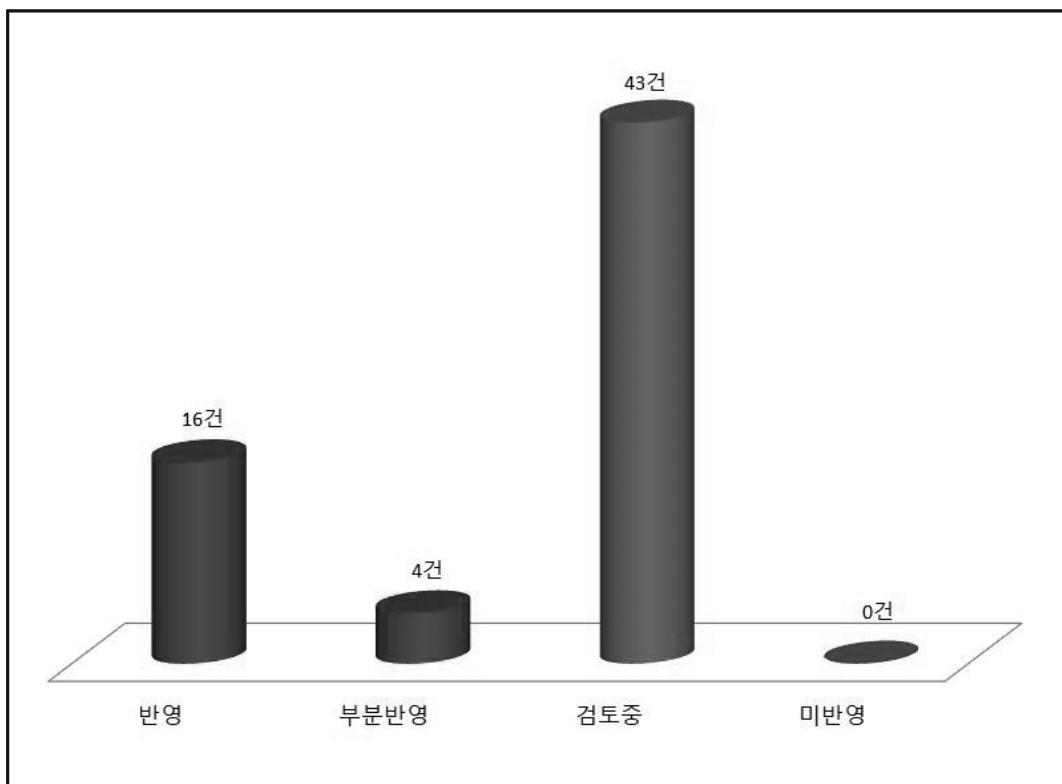
(2018년 기준)

구 분	합 계	반 영	검토중	미반영	반영률
건 수	63 (63)	20 (22)	43 (41)	-	31.7% (34.9%)

\* ( )은 2019년 3월 기준(반영 22건, 검토중 41건)

- 2018년도 연간 63여건의 기업규제로사항을 수집하여, 이중 20건(31.7%)을 정부정책 및 사업에 반영시킴
- 또한 현재 검토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 도표로 본 건의 추진현황



## 2. 반영 건의

No. 1	건의명	對이란 수출입대금 회수 불가 관련	건의일	18. 1. 3
건의처	청와대민원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우리은행, 금융위원회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란 고객사인 PIDEA으로부터 Second Advance Payment (PO 금액의 30%)인 1,894,758,382원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2017.11.22.)</li> <li>○ 우리은행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对이란 무역관련지침으로 인하여 B/L 제출 없이는 출금이 불가하다는 입장 - 대경○○○○(주)은 현재 납품 전이기 때문에 B/L을 발행하지 못해 수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IDEA사로부터 송금받은 수출대금(약 19억원) 인출 협조 요청</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수출대금 인출 허가(18.1.12)</li> </ul>				

No. 2	건의명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요청	건의일	18. 2. 19
건의처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산자위 소속 지역국회의원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수주측면에서는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건조측면에서는 19년 이후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li> <li>○ 울산 인구는 15년 이후 무려 2만7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19개월 연속 인구가 감소함</li> <li>○ 현대중공업은 수주잔량 감소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휴인력이 5,000여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 지속</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조선업 정상화 및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정기간 재연장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li> <li>-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주 지원 통한 고용 유지</li> </ul> </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12월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6개월간 재연장 (18.4.5)</li> </ul> </li> </ul> <p>*고용위기지역기간 : 18. 4. 5 ~ 19. 4. 4</p>				

No. 3	건의명	노동현안 (근로시간 단축)	건의일	18. 2. 5																														
건의처	국회의장-전국상의 회장단 정책간담회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기업들도 공감</li> <li>○ 다만, 갑자기 단축할 경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인력 충원하기 힘들고, 생산차질 등 경영상 어려움 크게 가중</li> <li>○ 대법원 판결이나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는 큰 혼란 예상,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설정</li> <li>○ 또한 대규모 소송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li> <li>○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li> <li>○ 휴일근로 할증은 50% 유지</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p>○ 국회 본회의,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18.2.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별 · 규모별 유예기간 적용</li> <li>- 할증 임금 지급은 중복 없이 지급</li> </ul> <p>※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18년 7월</th> <th>'20년 1월</th> <th>'21년 7월</th> <th>'23년 1월</th> </tr> </thead> <tbody> <tr> <td>300인 이상</td> <td>주 68시간</td> <td>주 52시간</td> <td></td> <td></td> </tr> <tr> <td>299-50인</td> <td></td> <td>주 68시간</td> <td>주 52시간</td> <td></td> </tr> <tr> <td>49-30인</td> <td></td> <td></td> <td>주 68시간</td> <td>주 52시간</td> </tr> <tr> <td>29-5인</td> <td></td> <td></td> <td>주 68시간</td> <td>주 60시간*</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주 52시간</td> </tr> </tbody> </table> <p>*2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8시간) 한시적 적용</p>						'18년 7월	'20년 1월	'21년 7월	'23년 1월	300인 이상	주 68시간	주 52시간			299-50인		주 68시간	주 52시간		49-30인			주 68시간	주 52시간	29-5인			주 68시간	주 60시간*					주 52시간
	'18년 7월	'20년 1월	'21년 7월	'23년 1월																														
300인 이상	주 68시간	주 52시간																																
299-50인		주 68시간	주 52시간																															
49-30인			주 68시간	주 52시간																														
29-5인			주 68시간	주 60시간*																														
				주 52시간																														

No. 4	건의명	노동현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건의일	18. 2. 5
건의처	국회의장-전국상의 회장단 정책간담회			
<b>주요내용</b>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총액 중 일부금액만을 최저임금으로 인정, 산입범위가 좁다보니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음</li> <li>○ 특히,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다수를 차지하는 호봉제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호봉테이블 전체가 도미노식으로 상향조정되어 줄줄이 임금을 인상해야 함</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총액 기준으로 현실화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리후생수당 및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li> </ul> </li> </ul>			
<b>건의결과</b>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본회의, 최저임금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18.5.25)</li> </ul>				

No. 5	건의명	국가산단내 레미콘 생산재개 협조 요청	건의일	18. 3. 2
건의처	청와대민원실,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추진단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업체의 민원(공장등록증상 레미콘 제조업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레미콘 판매 및 납품에 대한 문제제기)과 산업단지공단의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외의 사업제한' 행정 조치로 레미콘 제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li> <li>○ 레미콘 병행생산 등록변경 조치(13.12.9.)를 비롯, 산단공의 요청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성실히 제출하였고, 구두 통보를 통해 업종 추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0여년간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향토기업이 이번 생산 중단 조치로 인해 경영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li> <li>○ 관리기본계획 고시 시행(95.2.13) 이전 입주계약 체결 없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에 대하여 당시 관리 기본계획상 경고 조치 적용 건의</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업단지공단이 18. 2. 27, 18. 4. 4 한국○○○○(주)에게 한 시정명령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 반려처분을 각 취소함(울산지방법원: 18.8.30)</li> </ul>				

No. 6	건의명	부울경 비즈니스 라운지 환경개선 요청	건의일	18. 3. 5		
건의처	부울경 비즈니스 라운지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팅룸 에어컨 부재로 인해 여름철 회의 시 더위 민원 지속적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운지가 코레일 자산인 관계로 신규 에어컨 설치 불가</li> </ul> </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실 격벽 위 창문 미닫이 창 공사</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실 미닫이 창 공사 완료(18.3.23)</li> </ul>						

No. 7	건의명	LNG복합발전소 건립 협조	건의일	18. 3. 9		
건의처	울산광역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당진에 코파워를 LNG발전소 전환으로 확정</li> <li>○ SK○○, 당진○○○○가 보유한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 변경, 기존 석탄화력발전에서 LNG · LPG복합화력발전으로 전환 추진 승인</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지역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LNG · LPG 복합발전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지선정 관련, 적극 협조 요청</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p>○ SK○○와 울산시는 친환경 가스 복합발전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를 제공하고, 인허가 처리 등 행정적, 재정적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울산시-SK○○ 신규사업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18.9.19)</p>						

No. 8	건의명	폐기물인 굴뚝 검뎅이(분진) 반출 협조	건의일	18. 3. 12
건의처	낙동강유역환경청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업 침체에 따른 위기극복 방안으로 비조선 분야 사업 다각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스크러버 수처리시스템 개발</li> <li>○ 정확한 성능 검증 등 최적의 결과 도출위해 굴뚝 검뎅이 (실제 오염물질)가 필요하지만 폐기물 반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인 스크러버 수처리시스템의 제품 상용화를 위해 폐기물 반출 협조 요청</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처리업체, 단순 실험을 위한 소량 반출에 합의 다만 해당업체의 비산재의 경우 성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결과물 도출에 어려움 발생(18.6.11)</li> <li>○ 낙동강유역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용 폐기물에 대한 관련기관과의 임시허가 또는 규제특례 허용 여부 등 검토 중</li> </ul> </li> </ul>				

No. 9	건의명	폐기물 재활용 처리에 대한 세부기준 수립 요청	건의일	18. 4. 18
건의처	청와대민원실, 환경부, 규제개선추진단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p>○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 매립 및 소각을 감소시키기 위해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재활용을 최대한 유도</p> <p>○ GS○○○○(주)은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를 현재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정부방침에 따라 재활용 처리로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하였지만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는 마땅한 세부기준이 없어 재활용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p>			
건의내용	<p>○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가 재활용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 관련 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세부기준 마련 요청</p>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p>○ 환경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 품목의 규격이 한국산업표준 등에 있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득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치 않고 재활용이 가능함을 통보(18.5.1)</li> </ul>				

No. 10	건의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조속 지정 요청	건의일	18. 5. 16
건의처	청와대민원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산자위소속 지역국회의원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조선업 침체로 중소 조선업체의 폐업, 현대중공업의 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li> <li>○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정부와 울산시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업 불황, 부동산 경기위축 등 지역산업 전체로 위기 확산</li> <li>○ 현대중공업 도크 3기 폐쇄 위기, 신규 수주 물량도 설계 기간을 감안하면 1~2년 후에 건조 가능</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산업 및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조속한 지정 및 지원을 건의</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18.5.29)</li> </ul> </li> </ul> <p>*지정기간: 18. 5. 29 ~ 19. 5. 28</p>				

No. 11	건의명	공공입찰 참가 제한 유예 요청	건의일	18. 5. 16
건의처	청와대민원실, 국무조정실, 산자부, 기재부, 산자위소속 지역국회의원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조선산업 발전 전략으로 2019까지 2년간 군함 등 40척 5.5조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계획을 발표(18.4.5) 하였으나 현대중공업은 공공입찰참가 제한으로 수주 불가</li> <li>○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발생 및 경쟁입찰 불가로 가격 인상과 품질저하 우려</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산업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조선업 불황 회복시까지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제한 유예를 건의</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 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p>○ 울산광역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방위사업청 등 방문, 법률적으로는 불가 방침이지만 현대중공업의 독점기술 당위성 부문 강조(18.5.30)</li> </ul> <p>○ 서울중앙지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18.10.18)</li> </ul>				

No. 12	건의명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요청	건의일	18. 8. 21
건의처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조선 · 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li> <li>○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울산지역 자동차업계는 올 상반기 '수출(-9.5%)'과 '생산(-4.5%)'이 모두 크게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위기가 점차 중소협력업체로 전이되면서 자동차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li> <li>○ 선제적인 구조조정 및 기술개발 등으로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은행권의 신규대출 제한, 대출금의 한도 축소, 조기 상환 요구 등으로 상당수 협력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 대출 및 정부와 금융권의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지원책 협조 요청.</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관계부처 합동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18.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위기대응지역 대출 · 보증 만기(1조원) 및 금융지원 신설 확대(0.7조원)</li> <li>19년 말까지 연장</li> <li>· 조선사-기자재 상생의 제작 금융 프로그램 신설</li> <li>· 유망사업 분야 진출 보증 프로그램 신설</li> <li>· 중소 조선사 RG 보증 규모 확대</li> </ul> </li> </ul>				

No. 13	건의명	울산공항 국내선 노선감편 계획 철회 협조 요청	건의일	18. 9. 28		
건의처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항현황 : 일 20편 → 일 16편(일 4편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김포: 일 14편(대한10, 에어부산4) → 일 10편(대한6, 에어부산4)</li> <li>- 울산~제주: 일 6편(대한2, 에어부산4) 변동없음</li> </ul> </li> <li>○ 오전 시간대 감편으로 인천국제공항 항공편 연결 불편</li> <li>○ 비즈니스 고객의 연결 항공편 부재로 지역경제 활동 불편 초래</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공항 활성화, 비즈니스 항공수요에 효과적 대처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측에 항공편 감축 계획 철회 검토 건의</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4편 감축에서 2편 감축으로 조정해서 운행 예정(18.10.17)</li> </ul>						

No. 14	건의명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 개선 요청	건의일	18. 9. 28		
건의처	국세청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10일 → 15일) 연장으로 충실히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으나,</li> <li>○ 사전에 세무조사를 통지받는 업체는 60% 정도로 사전통지가 생략되는 경우는 여전히 많은 상황임.</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증거인멸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사전통지를 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도'의 취지를 살려주기를 건의</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p>○ 국세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비정기 조사의 경우에는 가급적 사전통지 생략비율을 축소하도록 노력(18.9.28)</li> </ul>						

No. 15	건의명	석유화학공단 통합파이프라 크축사업 정부 지원 요청	건의일	18. 11. 02
건의처	산업부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울산석유화학공단과 온산국가산단 지하에 230여개 업체가 사용하는 지하 배관(1,770여km)이 묻혀있음. (화학관 821.1km, 가스관 572.2km, 송유관 158.9km, 상하수도관 124.2km, 전기 · 통신관 90.8km, 스팀관 7.3km 등)</li> <li>○ 20년 이상 된 노후배관이 약 60%를 차지하며, 30년 이상 된 노후배관도 25%에 배관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얹혀 있어 더 이상 물류수송을 위한 매설공간이 부족하고 시설 노후화와 굴착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파이프라크 전체사업(1~3구간, 사업비 4,205억원)중 시범사업 (1구간: 6.3km, 사업비 773억원)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용역비(13.9억원) 등 적극지원 건의</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업안전공단 주관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라크 지상화 사업 기본 설계 용역 실시(2019)</li> <li>○ 용역기간 : 10개월</li> <li>○ 용역비 : 5억 6000만원 국비 확보(18.12.10)</li> </ul>				

No. 16	건의명	조선사내 협력사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요청	건의일	18. 11. 02
건의처	이낙연 국무총리 울산경제인 간담회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p>○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조선 · 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p>			
건의내용	<p>○ 조선사내외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 건의 (조선업 인력양성 대책 수립 등)</p>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p>○ 정부 관계부처 합동,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발표(18.11.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전환 촉진을 통한 1조원 규모 중소조선사 대상 新시장 창출 및 친환경 조선강국으로의 도약 지원</li> <li>- 제작금융, 보증 등 7천억원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만기연장</li> <li>- 고부가가치 수소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 미래경쟁력 제고</li> </ul>				

No. 17	건의명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요청	건의일	18. 11. 02
건의처	이낙연 국무총리 울산경제인 간담회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ICT 기술이 날로 발전되면서 적용 분야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상 물류 시스템과 선박 자동화, 지능화의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li> <li>○ 그러나 국내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계는 친환경·스마트화 패러다임 변화에 자체 대응 역량이 부족하여 중장기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li> <li>○ ICT 연구개발 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고도화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조선관련 국비 증액이 시급함.</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 국가예산 지원 건의</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p><input type="checkbox"/> 정부 관계부처 합동,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발표(18.11.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운항 기자재·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통한 중형 자율운항 선박 (1,700TEU급 컨테이너선) 개발 추진('19.2월 산업부-해수부 공동예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안 : (사업기간) 20년~'25년(6년간), (사업비) 약 5,000억원</li> </ul> </li> <li>- 핵심기자재·시스템* 국산화를 통한 중소조선사 및 기가재사의 미래 대응역량 제고 및 실증 이력 확보를 통한 시장개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자재)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통합항해장치(INS), Autopilot 등</li> <li>(시스템) AI를 이용한 안전운항(충돌회피), 경제운항(최적항로), 자동유지보수 등</li> </ul> </li> <li>- 자율운항 테스트센터, 선박 원격조종이 가능한 운항조정 상황실, 자동 선하적 및 이접안 기능을 갖춘 항만 등 인프라 구축</li> </ul>				

No. 18	건의명	조선기자재기업 금융 유동성 확대 지원 요청	건의일	18. 11. 02
건의처	이낙연 국무총리 울산경제인 간담회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대형사 수주에 따른 일감 확보에도 불구하고 오랜 불황에 따른 신용도 하락,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 조달이 힘든 상황임</li> <li>○ 특히, 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 생산업체는 높은 제품단가, 사업 신규진입 등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li> <li>○ 아울러,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Track Record 확보가 어려워 친환경 등 확대되는 시장에 진출이 힘든 상황임</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기자재 거래 기피에 따른 금융거래 신규/연장 등의 한계 해소 건의</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p>○ 정부 관계부처 합동,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발표(18.11.22)  - 제작금융, 보증 등 7천억원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만기연장</p>				
프로그램명	지원규모	지원대상	관련기관	
위기지역 대출·보증 만기연장	약 1조원	기자재업체	산은, 수은, 기은, 중진공, 새마을금고, 신보, 기보, 지신보	
조선-기자재 상생 (제작금융)	1,000억원	기자재업체	신보, 기보	
유망사업 진출지원 (보증·제작금융)	2,000억원	신분야 진출 기자재업체	무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1,000억원	중소조선사	무보	
방산제도 개선	3,000억원	방산조선사	방진회, 서울보증보험 등	
합 계	1조 7,000억원	-		

No. 19	건의명	고용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건의일	18. 11. 12
건의처	성윤모 산업부장관 간담회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p>○ 최근 울산경제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감소 : 117만 3,534명('15) → 115만 8,847명('18.7월)</li> <li>- 수출 급감 : 1,015억불('11) → 667억불('17) : 34% 감소</li> <li>- 부도율 증가 : 0.06%'(16) → 0.27%'(18년 상반기) : 전국 0.15%</li> <li>- 폐업률 확대 : 12.9%'(15) → 14.3%'(17) : 전국 12.6%</li> <li>- 고용율 하락 : 58.4%'(18.7월, 전년 동월 대비 1.7%p하락)</li> <li>- 실업률 증가 : 4.9%'(18년 7월, 전년 동월 대비 1.1%p상승)</li> <li>- 부동산 침체 : 매매가격 전년 동월 대비 - 3.7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 0.02%, 서울 0.32%, 수도권 0.11%, 지방 - 0.13%</li> </ul> </li> </ul>			
건의내용	<p>○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조선,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 요청</p>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p>○ 정부 관계부처 합동,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발표(18.11.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전환 촉진을 통한 1조원 규모 중소조선사 대상 新시장 창출 및 친환경 조선강국으로의 도약 지원</li> <li>- 제작금융, 보증 등 7천억원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만기연장</li> <li>-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연장 추진</li> <li>- 고부가가치 수소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 미래경쟁력 제고</li> </ul>				

## 2. 검토중 건의

No. 1,2	건의명	SDN LIST 발표시 이란 항만운영자의 이용 가능한 항만공개협조 요청 및 이란 목적항구 제재대상 리스트 제외관련 협조	건의일	18. 1. 18
건의처	美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청와대민원실, 전략물자관리원, 규제개선추진단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2월 이란의 PIDECA와 총액 63억원 규모의 열교환기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내달 1차분 선적(18억원 상당) 예정</li> <li>○ 다만, 산자부 전략물자관리원은 이란의 최종 목적항인 아살루에항(Assaluyeh Port)이 이용 가능하다는 美재무부 공식발표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 방침</li> <li>○ PIDECA가 제재대상 항구가 아닌 반다르암바스항으로 최종 목적항을 변경함으로써 제품 선적이 가능하게 됨</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한 기준의 제재대상자 운영항만 리스트 공개 요청(美 재무부)</li> <li>○ 대경○○○○○(주)를 포함한 울산지역 플랜트업체들이 항후 아살루에항을 목적항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재대상 리스트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산자부 등)</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으로 총 2차례 공문발송</li> <li>○ 산자부, 이란 항만 운영사인 TME(제재대상자)사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대리 회사를 내세워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아살루에항을 포함한 6개 항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제 제재를 적용. ※ 산자부와 계속 협의중</li> <li>※ 주요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5월 : 미국, 핵합의 일방적으로 탈퇴</li> <li>- 2018. 8월, 11월 : 미국, 두 차례에 걸친 대 이란제제 복원</li> </ul> </li> </ul>				

No. 3	건의명	노동현안 건의(통상임금 범위 관련)	건의일	18. 2. 5
건의처	국회의장-전국상의 회장단 정책간담회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임금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산업 현장에서 분쟁 발생</li> <li>○ 입법이 지연돼 통상임금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 된다면 향후에도 노사갈등 및 소송발생 소지</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임금개념과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 줄 것을 건의</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했지만 하급심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짐</li> <li>○ 민주당,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일치시키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비중(18.6.12)</li> </ul>				

No. 4	건의명	수소충전소 설치 입지 규제완화 : 학교로부터 이격거리 완화(200m → 25m)	건의일	18.2.6/3.21
건의처	혁신성장 음부즈만(기재부), 규제개선추진단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대학 등 학교부지로부터 200m 이내의 부지에는 수소충전소 건설 불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전기차의 도심지역 보급 확대를 위해 학교부지 근처에 수소충전소 설치시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선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관련 자문위원 자문 및 검토결과 규제개선과 관련된 건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종결처리(18.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보건법 관련 문제로 교육부와 협의중</li> </ul> </li> </ul> </li> <li>○ 규제 샌드박스 시행(19.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 승인</li> </ul> </li> </ul>				

No. 5	건의명	수소충전소 설치 입지 규제완화 : 공동주택, 병원, 어린이집 이격거리 완화(50m→25m)	건의일	18.2.6/3.21
건의처	혁신성장 옴부즈만(기재부), 규제개선추진단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되는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는 공동주택(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25m 이격된 위치에 설치 가능하지만 수소충전소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도심지내 수소충전소 설치 확보에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2</li> </ul> </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25m만 이격시켜도 건설이 가능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해줄 것을 건의</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선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부와 계속 협의중이며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18.4.26)</li> </ul> </li> </ul>				

No. 6	건의명	일반주거지역 내에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	건의일	18.2.6/3.21
건의처	혁신성장 음부즈만(기재부), 규제개선추진단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고압가스제조(수소자동차 충전)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설치가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로 명시</li> </ul> </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수소자동차충전시설을 포함 시켜줄 것을 요청</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선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부와 계속 협의중이며 시일이 결될 것으로 판단(18.4.26)</li> </ul> </li> </ul>				

No. 7	건의명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에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	건의일	18.2.6/3.21
건의처	혁신성장 옴부즈만(기재부), 규제개선추진단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고압가스제조(수소자동차 충전)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설치가 불가능</li> <li>- 준주거 및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소, 저장소로 명시</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단, 수소자동차충전시설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삽입 요청</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li> <li>- 고압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준주거 · 상업지역에도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착수(18.6.8)</li> </ul>				

No. 8	건의명	다양한 방식의 수소충전 인프라 허용	건의일	18.2.6/3.21
건의처	혁신성장 옴부즈만(기재부), 규제개선추진단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비가 30-50억원 드는 고정식 수소충전소에 비해 10-20억원이면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 이동식 수소충전소에 대한 법령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압가스법이 개정돼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에 대한 운행 법규만 마련되면 즉시 상용화 가능</li> </ul> </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동식 및 셀프 충전형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li> </ul> <p>*이동식 수소충전설비 : 일본 등 일부 선진국가의 경우 허용되고 있음</p>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No. 9	건의명	집단에너지사업자 예비전력요금 면제 협조 건의	건의일	18. 2. 13
건의처	청와대민원실,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규제개선추진단, 산자위소속 지역국회의원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이후 총 13회의 정전사고로 약 1,78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입주사의 경쟁력 하락으로 정전 사고 예방 필요성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사들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지만 한전의 보상이나 비용 투자에 의한 안정화 대책 전무</li> </ul> </li> <li>○(주)○○는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방하고, 각종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력공급선 다양화 및 안정화 사업에 총 390억 원 투자</li> <li>○하지만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적용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와의 해석차이로 인해 예비전력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전력계통 안정화 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따라 400MW~600MW의 경우 상용 전력 2회선을 공급받을 수 있으나 적용기준을 계약 전력이 아닌 실제 최대 피크값을 적용하여 예비전력요금이 부과 되고 있는 상황(계약전력 400~410MW, 최대수요전력 280~290M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전력요금은 향후 고스란히 입주사에게 비용전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결국 입주사들은 원가상승에 따른 실적악화가 불가피</li> <li>- 비슷한 조건의 업체의 경우 요금면제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 한전의 적용기준이 애매모호함</li> </ul> </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화학단지내 입주업체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주)○○에 대한 예비전력요금 면제 요청</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 한전의 약관 시행세칙은 설비 투자와 효율적인 설비 사용을 위해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회선수를 계약전력이 아닌 최대수요전력에 따라 정함(18.3.26)</li> <li>○ 한국전력, (주)○○를 특정하여 예비전력요금을 면제할 경우, 특혜시비 논란 및 전력공급 거래질서 훼손 우려뿐만 아니라 예비요금을 성실납부증인 고객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예비전력요금 면제는 곤란함(18.3.7)</li> <li>※ 산자부와 계속 협의중</li> </ul>				

No. 10	건의명	나라장터 입찰공고 시 제한경쟁입찰제 (지역제한) 시행	건의일	18. 2. 21
건의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사를 비롯한 지역 LED 조명관련 업체들은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보유하고도 울산교육청이 전국 단위 입찰을 진행, 타지역업체들과의 지나친 가격 출혈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반대로 타지역에는 지역제한으로 입찰 참가가 불가능해 울산지역 중소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li> <li>○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물품의 제조·구매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타광역시 교육청을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향토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를 정책적으로 시행</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토기업 육성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 시행 검토 요청</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교육청 LED규격에 맞는 제품 보유 업체가 1-2개사에 불과, 현재로서는 제한경쟁입찰제 시행이 어려운 상황임(18.4.3)</li> </ul> </li> </ul> <p>※ 교육청과 계속 협의중</p>				

No. 11	건의명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공장용지 확보 요청	건의일	18. 3. 21
건의처	규제개선추진단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사의 사이클로 헥사논 공장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고부가 가치 제품인 1.6-HDO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고용창출이 가능한 상황</li> <li>○ 하지만 미포국가산업단지 녹지공간 용도제한으로 수차례 건의한 바 있지만 대체녹지 확보를 통한 용도변경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변경에만 가능하다는 국토부와 울산광역시의 답변</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 신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증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완화하여, 공원녹지지역을 해제하고, 공장용지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요청</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울산광역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포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최소 녹지비율에 부족하여 대체녹지 확보 없이 녹지지역을 산업구역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함.</li> </ul> </li> <li>○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의 2 제3항에 따라 여러 기업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 대체 녹지 확보 세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검토 가능(18.4.26)</li> </ul>				

No. 12	건의명	공장설비 증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농림→계획관리)	건의일	18. 3. 21
건의처	규제개선추진단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가 속해 있는 남창공단은 2002년 공단조성당시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조성되었으나 지속적인 용도변경 요청으로 2010년 4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당시 건축물 소재업체 지번만 변경되었음</li> <li>○ 당사는 2012년 10월경 현 소재지의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같은 공단내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물증축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사업 확대로 건물 및 공장 증축을 하려고 해도 건폐율 20% 규제 적용을 받아 현실적으로 증축이 어려운 관계로 농립지역을 해제하고, 계획 관리지역으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요청</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도에 추진할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 검토(18.4.11)</li> </ul> </li> <li>○ 울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산업단지 지정은 남창공단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검토가 가능하며, 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준용, 중장기 검토 (18.5.4)</li> </ul> </li> </ul>				

No. 13	건의명	공장설비 증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공업)	건의일	18. 3. 21
건의처	규제개선추진단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p>○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사업확대를 위해 공장증설을 하려고 해도 건폐율 20% 규제적용을 받아 현실적으로 증설 어려움,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성장에 애로</p>			
건의내용	<p>○ 공장설비증설 및 기숙사부지 확보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해제, 일반공업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p>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p>○ 울산광역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도에 추진할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 검토(18.4.18)</li> </ul> <p>○ 국토교통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녹지지역에서 높은 건폐율을 허용할 경우, 주변환경 부조화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물리적 문제, 용도지역 지정취지와 배치 등의 문제 발생(18.4.23)</li> </ul>				

No. 14	건의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건의	건의일	18. 5. 28
건의처	청와대민원실, 국무조정실, 산자부, 기재부, 고용부, 환노위, 산자위소속 지역국회의원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산업계,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산업형태에 맞는 근로시간 재정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유 · 석유화학업계) 정기보수기간에는 단축된 근로시간 준수가 불가능하며, 교대근무시 공장증설 시운전이나 장기 휴가에도 문제 발생</li> <li>- (건설업계) 적정공기 미화보로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등 부작용 발생,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신뢰보호 및 업체 규모별 시행시기 상이에 따른 혼란 발생</li> <li>- (IT업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한 업종 특수성 반영 필요</li> </ul> </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추가 요청</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p>※ 2019년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19.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무시간 의무화</li> </ul> </li> </ul> </li> </ul>				

No. 15	건의명	울산 관내 폐기물 매립시설 인프라 확충 건의	건의일	18. 5. 29
건의처	울산광역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울산산업단지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폐기물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평균 불연성 폐기물 62%, 가연성 폐기물 38% 발생</li> </ul> </li> <li>○ 울산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인프라 중 관리형 매립시설은 총 3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포화상태 직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립시설 잔여기간 평균 1.6년에 불과, 최장 3년내 매립지 잔량이 모두 소진될 예정임</li> <li>- 타지역에서는 지정폐기물 반입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li> </ul> </li> <li>○ 매립시설 감소시 경쟁체제에서 독과점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처리 단가 인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저하 예상</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부지 및 시설확대</li> <li>- 정부(지방정부) 주도 공공형 산업계 폐기물 매립장 확충</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부처와 울산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검토 중(18.5.29)</li> <li>○ 산업폐기물처리 확충방안 연구용역 시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 : 녹색환경지원센터(환경부, 울산시, 울산대 컨소시엄으로 설립)</li> <li>- 기간 : 2019년 1월 ~ 8월</li> <li>- 내용 : 공영개발과 민간 컨소시엄 2개 방안에 대한 검토</li> </ul> </li> </ul>				

No. 16	건의명	원전지원금 적용지역 확대 건의	건의일	18. 5. 29
건의처	울산광역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울산지역 원전 지원금의 적용 지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일원과 울주군(특별지원사업)에 국한</li> <li>○ 하지만 방사능 누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울산광역시 대부분 지역이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능 피해 지역과 경제적 이득 지역이 상호 다름</li> </ul> </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전지원금 지원사업 중 특별지원사업의 범위를 현행 자치구에서 지방 자치단체로 확대 적용</li> <li>○ 원전지원금 적용지역을 원전 방사능 긴급 보호조치 계획 구역으로 확대하여 적용</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부처와 울산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검토 중.</li> </ul>				

No. 17	건의명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건의	건의일	18. 6. 14
건의처	산림청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p>○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은 울산의 역사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유기체이자 생태자연환경이 살아 숨쉬는 최적의 정원공간으로서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정원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정원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정원 지정 대상지임</p>			
건의내용	<p>○ 국가정원 지정으로 태화강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세계화하고, 국내 정원산업 기반구축에 기여함은 물론 울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p>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p>○ 산림청, 보완자료 제출 의견서 울산시에 전달(18.7.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보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수해에 대비한 침수대책, 정원조례, 정원진흥계획 전담조직 신설 등</li> </ul> </li> </ul> <p>○ 울산시 대응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8.12월 말)</li> <li>- 태화강 및 태화강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태화강 정원 사업단' 신설 입법예고(19.2.25)</li> </ul> <p>※ 2019년 7월 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발표</p>				

No. 18	건의명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건의	건의일	18. 6. 20		
건의처	대한상공회의소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72개 상공회의소는 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선거를 실시하며, 경선 혹은 합의(無선거)의 과정을 거쳐 의원을 선출함</li> <li>○ 대다수의 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 화합과 투표로 인해 발생되는 과도한 예산 및 인력낭비를 막기 위해 합의로 의원을 선출하고 있지만 이는 법에 규정된 회원의 의원 선출권을 제한함은 물론 선거가 과열될 경우 선거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선거는 투표용지의 인쇄 및 투·개표장 설치, 투·개표 진행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되며, 특히 수천명의 기업인이 투표 당일 투표장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지역경제에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함</li> </ul> </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상의가 선거 실시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또한 선거권자가 투표권 행사라는 권리를 보다 투명하고 간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한상의 차원의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필요</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No. 19	건의명	회비부과 관련 국세청 매출자료 입수방안 제도화	건의일	18. 6. 20
건의처	대한상공회의소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불황에 따른 미납회원사 증가로 회비징수에 어려움 가중</li> <li>○ 상공회의소법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2항에는 회원의 의무만 규정, 자료제출 근거 및 회비미납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정은 없음</li> <li>○ 국세청 기업체 매출 자료 미확보로 회비 산정에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적으로 회원사 매출액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응답률이 낮으며, 보완책으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을 이용하여 회원사 매출액 추정</li> </ul> </li> <li>○ 신규 당연회원 누락 가능성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증가 등으로 신규 당연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업체가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없어 신규 회원사 파악이 쉽지 않음</li> </ul> </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기업체 매출자료의 원활한 입수를 위해 상의법상 자료제출 근거 명기 등 제도화에 따른 대한상의 역할 협조</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No. 20	건의명	상의 회원사 자격 완화 관련 상의법 개정 검토	건의일	18. 6. 20
건의처	대한상공회의소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공회의소법 제10조(회원)의 회원자격 대상의 상공업 범위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4호까지로 규정되어 있음</li> <li>○ 회원자격 미달로 인한 상공업 활동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골프산업이 급격히 발달하여 대중적인 산업임에도 이들 업종이 상의 회원자격 미달로 인해 회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li> </ul> </li> <li>○ 지방상의의 재정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악화, 회비부과자료 입수 한계 등으로 상공회비 미납, 회비감면 증가, 당연가입 회원감소로 지방상의 재정악화 가중</li> </ul> </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상의 회원사 자격범위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4호까지 13개업종에서 제16호와 제17호를 추가하여 15개 업종으로 확대가 필요</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No. 21	건의명	근로시간 감축(8시간→6시간)을 통한 5조4교대 시행	건의일	18. 6. 27
건의처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유 · 석유화학업계는 정기보수기간에 단축된 근로시간 준수가 불가능하며, 교대근무시 공장증설 시운전이나 장기휴가에도 문제 발생</li> <li>○ 지역 산업계,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산업형태에 맞는 근로시간 재정립 필요</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시간 감축을 통해 현행 4조 3교대를 5조 4교대로 변경 요청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3시간에서 34시간으로 25% 축소, 급여는 20% 감소</li> <li>- 또한 1개 근무조가 늘어나면서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li> </ul> </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No. 22	건의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직급 상향 요청	건의일 18. 8. 1
건의처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지역국회의원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08년 3월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전국의 지방해양수산청 가운데 유일하게 청장의 직급이 기존 3급(부이사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하향 조정됨.</li> <li>○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최대의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배후 항만으로서의 역할 중대</li> <li>- 동북아 오일허브 및 울산 신항 개발 등 국책사업 추진</li> <li>- 울산항의 북방 물류중심 기지로서의 역할 제고 필요</li> <li>- 관장업무의 성격 및 기능 측면에서의 효율성 도모</li> </ul> </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항은 전국 최대이 산업지원항을 뛰어 넘어 북방경제협력 중심 기지항 등 한국경제를 이끌고 갈 차세대 항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수행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직급을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여 줄 것을 요청함</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 특별지방행정기관장의 직급 조정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18. 8. 20)</li> <li>○ 행정안전부, 지방해양수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상향은 각 부처의 요구, 행정안전부 조직검토, 기획재정부 예산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직급 상향 요청시에 기관규모, 행정수요, 직무의 곤란성·책임도,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할 예정(18. 8. 23)</li> </ul>		

No. 23	건의명	중소·중견기업 기준 요건 완화 요청	건의일	18. 9. 17
--------	-----	---------------------	-----	-----------

건의처  
부산지방국세청

###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중견기업 용어 신설, 2014년 1월 21일 법 시행일부터 10년 시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li> <li>○ 중견기업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이상 등 4가지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한 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지정</li> </ul> </li> <li>○ 또한, 규모 기준이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제조업 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지정</li> <li>○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될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 정책자금, 인력공급, 판로확보 등 다방면에서 160여종의 혜택이 사라지고, 30여개의 새로운 세금 납부, 규제 증가</li> <li>○ 특히 올해는 지난 2015년 중소기업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400여 기업들에게 적용됐던 3년 유예기간이 경과, 중견기업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함</li> </ul>
----------	--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는 이분법적 법령과 제도로 인해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된 역할과 국내경제 버팀목이 되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기준 요건 완화를 건의</li> </ul>
------	--

###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 부산지방국세청, 2014년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되어 중견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이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아 중견기업 정책과 산업, 무역, 통상정책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 검토(18.9.17)

No. 24	건의명	울산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설립 요청			건의일	18. 9. 17																																																																		
건의처	부산지방국세청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p>○ 출고량 기준 광역시 중 광주, 서울, 대구에 이어 4번째 규모의 주세 납부          &lt;지역별 주세 신고현황(2015년)&gt;</p> <p>(단위 : kℓ,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출고량</th> <th colspan="2">과세표준</th> <th colspan="2">납부할세액</th> </tr> <tr> <th>비중</th> <th>비중</th> <th>비중</th> <th>비중</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 <td>전국</td><td>3,804,100</td><td>100.0</td> <td>4,420,829</td><td>100.0</td> <td>2,810,770</td><td>100.0</td> </tr> <tr> <td>서울</td><td>148,430</td><td>3.9</td> <td>140,783</td><td>3.1</td> <td>7,621</td><td>0.3</td> </tr> <tr> <td>인천</td><td>20,999</td><td>0.6</td> <td>41,465</td><td>0.9</td> <td>10,208</td><td>0.4</td> </tr> <tr> <td>대전</td><td>40,008</td><td>1.1</td> <td>63,607</td><td>1.4</td> <td>43,455</td><td>1.5</td> </tr> <tr> <td>광주</td><td>198,398</td><td>5.2</td> <td>210,426</td><td>4.8</td> <td>145,470</td><td>5.2</td> </tr> <tr> <td>대구</td><td>117,456</td><td>3.1</td> <td>154,260</td><td>3.5</td> <td>101,433</td><td>3.6</td> </tr> <tr> <td>부산</td><td>64,573</td><td>1.7</td> <td>81,323</td><td>1.8</td> <td>32,955</td><td>1.2</td> </tr> <tr> <td><b>울산</b></td><td><b>67,554</b></td><td><b>1.8</b></td> <td><b>65,840</b></td><td><b>1.5</b></td> <td><b>38,863</b></td><td><b>1.4</b></td> </tr> </tbody> </table>					구분	출고량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국	3,804,100	100.0	4,420,829	100.0	2,810,770	100.0	서울	148,430	3.9	140,783	3.1	7,621	0.3	인천	20,999	0.6	41,465	0.9	10,208	0.4	대전	40,008	1.1	63,607	1.4	43,455	1.5	광주	198,398	5.2	210,426	4.8	145,470	5.2	대구	117,456	3.1	154,260	3.5	101,433	3.6	부산	64,573	1.7	81,323	1.8	32,955	1.2	<b>울산</b>	<b>67,554</b>	<b>1.8</b>	<b>65,840</b>	<b>1.5</b>	<b>38,863</b>
구분	출고량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국	3,804,100	100.0	4,420,829	100.0	2,810,770	100.0																																																																		
서울	148,430	3.9	140,783	3.1	7,621	0.3																																																																		
인천	20,999	0.6	41,465	0.9	10,208	0.4																																																																		
대전	40,008	1.1	63,607	1.4	43,455	1.5																																																																		
광주	198,398	5.2	210,426	4.8	145,470	5.2																																																																		
대구	117,456	3.1	154,260	3.5	101,433	3.6																																																																		
부산	64,573	1.7	81,323	1.8	32,955	1.2																																																																		
<b>울산</b>	<b>67,554</b>	<b>1.8</b>	<b>65,840</b>	<b>1.5</b>	<b>38,863</b>	<b>1.4</b>																																																																		
<p>○ 광역행정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울산주류협회는 경남도협회에 예속          *6개 광역시 중 울산주류협회만 유일하게 예속되어 있음</p>																																																																								
<p>○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p>																																																																								
<p>○ 건전한 주류문화 확산 정착 등 기본적인 역할 제약</p>																																																																								
<p>○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가속화로 인구 및 사업체 증가 예상</p>																																																																								
건의내용	<p>○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타 광역시 협회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경남·울산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예속되어 있는 울산주류협회를 광역시규모에 걸맞게 울산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설립 필요를 건의</p>																																																																							
	<p style="text-align: center;"><b>건의결과</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반영</th> <th>부분반영</th> <th>검토중</th> <th>미반영</th> <th>건의보류</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body> </table>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p>○ 부산지방국세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회원으로 사단법인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가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음.</li> <li>- 지방협회의 설립기준과 요건은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울산지방협회 설립은 우선 중앙회 정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li> <li>- 울산지방 종합주류도매업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본청에 건의 검토(18.9.17)</li> </ul>																																																																								

No. 25	건의명	서울산세무서 설치 요청	건의일	18. 9. 17
건의처	부산지방국세청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 세무서 별 관할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울산세무서(735km<sup>2</sup>):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li> <li>- 울산세무서(325km<sup>2</sup>): 남구, 울주군(옹촌면, 온산면, 온양면, 청량면, 서생면)</li> </ul> </li> <li>○ 서울산 지역에서 세무서까지 접근성 떨어져 민원불편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 1개소당 관할면적은 광역시 중 울산이 최고이며, 동울산세무서는 광역시 평균의 3배에 달함</li> <li>- 서울산권(언양, 상북 등) 세무서와의 거리 36km(버스 이용시 2시간 소요)</li> <li>- 부가세 등 신고철(1, 5, 7월)에 언양 출장소 임시운영 중</li> </ul> </li> <li>○ 납세인원 및 사업자 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지역 납세인원은 2014년 대비 3.7% 증가하여 전국평균 3.0%보다 높음</li> </ul> </li> <li>○ 동울산세무서 관할지역의 도시개발 가속화로 인구증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울산세무서 관할지역 내에는 KTX역세권개발, 길천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우정혁신도시, 군화장검지구, 장현지구 도시첨단산단, 강동권개발 등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인구 및 기업체수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li> </ul> </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지역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인구대비 세무서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서울산지역의 경우 세무서와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짐.</li> <li>○ 또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울산시민들의 세정 업무관련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산권을 담당할 (서울산)세무서 설치 필요를 건의</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지방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 관할 구역의 인구가 많고 면적도 턱없이 넓어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인지.</li> <li>- 이에 부산지방국세청 역시 2015년부터 매년 울주지역 세무관서(지서) 신설을 본청 및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li> <li>- 또한 타지역 역시 같은 문제로 건의가 많아 지자체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는 답변(18.9.17)</li> </ul> </li> </ul>				

No. 26	건의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	건의일	18. 10. 1
건의처	국세청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중소기업은 국내경기 부진과 고용환경 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li> <li>○ 고용창출이 발생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고용이 줄어들면 큰 폭의 감액 불이익의 발생</li> </ul> <p>※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26조(2017. 4. 18 개정)</li> <li>- 수도권이외 중소기업의 경우 8% → 10% 공제 확대(수도권지역 7% → 9%)</li> <li>-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이 줄어들어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음(추가공제가 없으며, 감소된 인원 1인당 1,000만원씩 감액)</li> </ul> <p>※ R&amp;D 설비투자세액공제 상향(정갑윤 의원 9/18일 개정안 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 내용 : 중소기업 현행 6% → 10%로 상향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1조</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유지가 힘든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보살펴 설비투자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중소기업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p>○ 부산지방국세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에 시행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투자촉진을 위하여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과 적용기한 연장, 신성장 기술 사업화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완화,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18.10.1)</li> </ul>				

No. 27	건의명	지방세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재산분) 중과대상에서 제외 요청	건의일	18. 10. 04
건의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규제개선추진단			
<b>주요내용</b>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등 갈수록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관련 법규와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 실제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위반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음</li> <li>○ 특히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속조치로 한층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최종 설비증설까지는 최소 2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장(발전용량 30MW이하)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li> <li>○ 이런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는 단순 행정착오나 시설 기준 미준수 등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않은 개선명령*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많게는 수억원의 주민세를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li> </ul> <p>*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p>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과 조선업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리한 중복 규제 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중대한 법 위반 시에만 해당기준 적용을 건의</li> </ul>			
<b>건의결과</b>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 환경오염 억제 및 정비비용 마련 등 중과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위반사항의 경중 축면보다는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형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18.10.31)</li> </ul>				

No. 28	건의명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활용	건의일	18. 10. 11
건의처	울산광역시, 울산지역 5개 구·군청, 울산교육청			
<b>주요내용</b>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기술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공급 물품 등록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나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등이 대표적인 방법임</li> <li>○ 현재 울산지역 수배전반, 태양광 발전장치 관련 업체들은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보유하고도 일부 관공서에서 다수 공급자 계약제도보다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li> <li>○ 또한, 울산지역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인증업체가 전무, 타지역(부산, 경남 등) 경쟁업체에게 대부분의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li> </ul> <p>*울산지역 우수조달업체: 3개사, 다수공급업체: 45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조달업체 등록 시 기술개발 관련 인증에 큰 비용과 시간 소요 · 대상물품에 대한 심사나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합격률은 20%에 불과</li> <li>○ 관내 중소기업이 국내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술과 품질향상을 통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조달우수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납품실적이나 경영상태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중소기업이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활용이 시급한 상황</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들의 육성보호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적극 활용을 건의</li> </ul>			
<b>건의결과</b>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No. 29	건의명	차량 운행제한 규정 개선 요청	건의일	18. 10. 19
건의처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국내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은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에 따라 축당 10톤으로 텐덤(후 2축), 트라이템(후 3축) 등 축 형식에 구분이 없으며, 총 중량은 최원축거* 구분 없이 40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70년 첫 제정 후 4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차량의 맨 앞바퀴와 맨 뒷바퀴 사이의 거리</li> <li>○ 그러나 근래 들어 일률적인 축 하중, 총 중량 규정은 오히려 화물차량의 불법개조를 양산하고, 과적을 유발해 도로 파손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대형 화물차량의 고도화로 인해 트랙터의 중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형식 승인 기준 내 중량으로 적재 시에도 총 중량 및 축 하중이 규제 기준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li> <li>○ 일반적으로 총 중량을 만족해도 화물의 특성과 위치에 따라 축 하중은 초과될 수 있으며, 몸체를 분리할 수 없는 변압기, 원전 터빈 등 도로법 제한 총 중량을 어길 수밖에 없는 대형 화물에도 똑같이 규정이 적용되어 탄력적인 법규 적용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 하중, 총 중량 제한 등 차량운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도로 파손을 예방하고, 차량의 주행 안전성과 도로교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40년 된 오래된 규정을 최근 현실을 반영하여 ‘축 하중 규제는 제외 총 중량 규제를 40톤에서 50톤으로 상향 조정’ 적용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No. 30,31	건의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 및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요청	건의일	18. 10. 23
건의처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b>주요내용</b>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 근로자들의 3D 생산직업종 취업기피로 중소 제조업체 생산현장의 인력난 심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li> <li>○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로 업종별 전문 인력 수급이 더욱 힘들어짐.</li> <li>○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한 근로자가 숙련공으로 성장하면 곧 고용 만기가 되어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찾아야 하는 악순환 거듭.</li> <li>○ 특히, 내국인 젊은 근로자가 거의 찾지 않는 주물 등 뿌리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도 <u>4년 10개월*</u>의 취업활동 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라 기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 발생.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총 3년이며, 취업기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하고, 출국 후 6개월(지방 소재 제조업 및 육아도우미의 경우 출국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다시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취업한 후 3년의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중 출국 전에 회사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해 1회에 한정, 1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됨.</li> <li>○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학력만 높고 실무능력은 부족한 인력이 많아져 생산성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안전사고 또한 증가 추세임.</li> </ul> <p>*현재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600명 수준</p>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한 장기고용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 및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건의</li> </ul>			
<b>건의결과</b>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No. 32	건의명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요청	건의일	18. 11. 02
건의처	이낙연 국무총리 울산경제인 간담회			
<b>주요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력산업 침체에 따라 산업 분야에 많은 투자가 필요</li> <li>○ R&amp;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R&amp;D 및 시설 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로 지역산업 구조의 보완과 경제활성화 유도 필요</li> <li>- 중소기업의 경우도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 보유비율이 낮거나 아예 없는 기업도 있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필요</li> </ul> </li> </ul>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환경 및 안전규제 강화와 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 및 환경 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있음</li> <li>-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화학물질관리법 등 각종 안전 및 환경 관련 법률시행에 따라 준수 비용이 수조원에 이릅</li> <li>-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생산성 향상시설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성 향상시설 주자 조세지출 3869억원(2018년) → 945억원(2019년)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li> </ul> </li> </ul> </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투자세액공제율을 15~20% 이상 대폭 확대 요청</li> </ul>		
<b>건의결과</b>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 기업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문, 5% 내외는 효과가 낮은편임.</li> <li>  금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논의 및 검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에 자료 검토 지시.</li> <li>○ 국무조정실, 고용위기지역 등 중소기업 3%→10% 적용 중(18.11.2)</li> </ul>				

No. 33	건의명	사내하청 문제 재검토 요청	건의일	18. 11. 02
건의처	이낙연 국무총리 울산경제인 간담회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현대○○○ 비정규직지회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농성 이후 물류 위탁사 까지 사내하청으로 보고 고용 노동부에서 직접 교섭을 권고함</li> <li>○ 현재 진행중인 특별고용을 중단하고 모든 부품사와 물류 회사 직원까지 현대차 직원으로 인정하라는 사내하도급 지회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요구라 판단</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특별고용 방식에 따른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사안에 대해 물류 위탁사 등의 근로자까지 정규직화를 할 수 없으므로 사내하청 문제 재검토 건의</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p>○ 고용노동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 과정에서 주체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당사자 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권고함.(18.11.2)</li> </ul>				

No. 34	건의명	뿌리산업 지원 위해 매곡산단에 금형산업 글로벌 지원센터와 공동물류센터 구축 지원 요청	건의일	18. 11. 02
건의처	이낙연 국무총리 울산경제인 간담회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은 자동차 산업 생산액이 39조 5천억으로 전국 2위에 해당, 자동차산업 종사자가 5만명이나 되는 등 울산에서 매우 비중이 크며,</li> <li>○ 부품 제조와 완성차 조립, 판매, 정비 등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가지고 있는 종합산업으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임</li> <li>○ 그러나 자동차산업 수출액은 '14년 대비 '17년에 13% 감소, 고용인원도 '15년 대비 올해 761명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곡 뿌리산업 선도단지에 금형산업 글로벌지원센터 및 공동물류센터 구축 지원을 건의</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도 선도단지 공모사업 시행 예정 (60억 규모) (18.11.2)</li> </ul> </li> <li>○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18.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 울산 매곡 뿌리산업 선도단지 지원사업(120억 원)</li> </ul> </li> <li>○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선도단지 시범사업 공고(19.2.21~3.29)</li> </ul>				

No. 35	건의명	동남권 특장차 인증 인프라(동남권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구축 지원 요청	건의일	18. 11. 02
건의처	이낙연 국무총리 울산경제인 간담회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완성차 생산량 감소로 울산지역 부품공급업체의 경영악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li> <li>○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꺼리고 인원감축, 기업 정리의 움직임도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함</li> <li>○ 자동차 부품산업 위기극복 및 생태계 구조개선을 위해 동남권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구축 필요</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부품기업의 특장차분야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특장차 인증 인프라(동남권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구축 지원을 건의</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실, 사업 필요성 면밀히 검토 예정(18.11.2)</li> <li>○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18.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 동남권 특장차 인증센터 구축(100억 원)</li> </ul> </li> <li>○ 동남권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건립 연구용역 시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 : (사)울산산학융합원</li> <li>- 기간 : 19. 1. 31 ~ 4. 30(3개월간)</li> <li>- 내용 : 동남권 특장차 자기인증센터의 차별적 필요성 및 당위성 확보 등</li> </ul> </li> </ul>				

No. 36	건의명	중소화학기업을 위한 'K-Reach 대응센터' 설치 요청		건의일	18. 11. 02		
건의처	이낙연 국무총리 울산경제인 간담회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울산의 중소화학기업은 제품 원가 경쟁력 약화로 수익 구조가 악화되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음</li> <li>○ 조선산업과 동일한 위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중소화학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중소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 중소화학기업을 위한 「K-REACH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화관법 및 화평법 대응을 신속하게 지원 요청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에 대한 화관법* 및 화평법** 대응 개별 로드맵 작성 지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li> <li>- 중소기업의 등록비 장기 분납 가능하도록 펀드 운영</li> <li>- 국가 R&amp;D 결과물 등록 시 「신규물질 개발 등록 지원 과제」 연계</li> </ul> </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품종 소량생산업체의 경우 자료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사, 컨설팅의뢰, 연구소 장비 활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중.</li> <li>- 또한 고용위기,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등록비 분납 등의 조치도 검토할 예정(18.11.2)</li> </ul> </li> </ul>							

No. 37	건의명	정밀화학기업도 뿌리산업으로 지정 지원 요청	건의일	18. 11. 02
건의처	이낙연 국무총리 울산경제인 간담회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울산의 중소화학기업은 제품 원가 경쟁력 약화로 수익 구조가 악화되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음</li> <li>○ 조선산업과 동일한 위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중소화학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중소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화학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밀화학기술(화학합성 및 배합)을 뿌리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 입안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모델인 모노츠쿠리 산업에 화학합성 등 3개 산언이 지정되어 있음</li> <li>- 공공연구기관이 정밀화학기술에 대한 기초기술을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li> </ul> </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밀화학을 뿌리산업으로 지정하기에는 법 개정 등의 문제가 있음.</li> <li>- 다만, 정밀화학 분야에 대한 지원 등 검토(18.11.2)</li> </ul> </li> </ul>				

No. 38	건의명	울산청년일자리센터 건립 지원 요청	건의일	18. 11. 02
건의처	이낙연 국무총리 울산경제인 간담회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업 장기침체, 지역 취·창업 여건 악화로 청년층 등의 인구 역외유출* 지속되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전국 평균을 상회**            *(15~29세 인구) '15년 240,258명 → '16년 236,061명(△4,197명) →            '17년 228,269명(△7,792명)</li> <li>**(청년실업률) 11.5% ※ 전국 10.1%</li> <li>○ 울산 청년대상 설문조사 결과 청년 일자리센터 설립을 가장 선호</li> <li>○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지원공간과 상담·정보제공, 창업·직업훈련, 커뮤니티, 창작터 등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일자리 창출 및 청년 취·창업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청년일자리센터」 건립 사업비 지원 요청</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건립 예산은 지원 불가.</li> <li>- 다만, 건물 리모델링비, 운영비는 적극 지원 가능(18.11.2)</li> </ul> </li> </ul>				

No. 39	건의명	소상공인 대출 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확대 요청		건의일	18. 11. 02		
건의처	이낙연 국무총리 울산경제인 간담회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구의 조선업 불경기로 인해 울산 전 지역에서 대부분 업종이 침체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게는 그 여파가 더욱 큰 상황임</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기 침체에 의한 지원자금 상환능력이 열악하여 기존 대출 지원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건의 (특히, 거치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li> <li>○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여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요청</li> <li>○ 일시적인 지원도 좋지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건의</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p>○ 금융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을 강화.</li> <li>- 또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검토.</li> </ul> <p>(18.11.2)</p>							

No. 40	건의명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의일	18. 11. 12
건의처	성윤모 산업부장관 간담회			
<b>주요내용</b>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10월 신산업 부문의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규제혁신 3법* 통과되면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규제가 개선됨</li> <li>○ 그러나 기업의 혁신 활동은 '샌드박스'와 무관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혁신 3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 (2019년 1월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융합 신제품 ·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신설</li> <li>*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 안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 배제</li> <li>* 임시허가 : 시장출시를 위해 2년 이내 임시 허가 부여</li> </ul> </li> <li>○ 지역특구법 (2019년 4월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신설'</li> <li>- 규제자유특구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구축</li> </ul> </li> </ul> </li> <li>□ 규제 샌드박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신기술 · 신산업 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해 주는 제도임</li> </ul> </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줄 것을 건의</li> </ul>			
<b>건의결과</b>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혁신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음.</li> <li>- 또한, 산업부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시장 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18.12.11)</li> </ul> </li> </ul>				

No. 41	건의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요청	건의일	18. 11. 15
건의처	울산광역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공장 구축 계획은 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 추진 중</li> <li>○ 그러나 울산지역 스마트공장 비율은 전국 대비 2.5%에 불과함</li> <li>○ 제조업 비중(75%)이 높은 지역 특성상 다품종 유연생산 등 제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업 체질 변화 필요</li> <li>○ 17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제조업 수급기업의 애로사항은 납기시간 단축,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 등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불량률 감소(46%), 납기시간 단축(35%), 생산성 증가(23%), 원가절감(16%) 등의 애로사항 해소 기대</li> </ul> </li> <li>○ 스마트공장 도입 · 확산으로 소비자 요구에 적시 대응 등 고수익 시장 접근과 공급사슬 작동 방식 변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 발굴, 제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기업들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울산시의 기업 부담금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건의</li> </ul>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p>※ 2019년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재)울산테크노파크, 울산TP 자동차기술연구소 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설치(19.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전반 혁신 활동과 지역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의 거점 역할 수행</li> <li>-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국비 50% + 기업체 자체부담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50% : 신규도입 최대 1억원, 고도화 추진 1억 5천만원까지</li> <li>· 기업체 자체부담 50% : 기업당 총 사업비의 20%, 최대 2천만원 시비 추가 지원</li> </ul> </li> </ul> </li> </ul>				

No. 42	건의명	지역 전문건설산업 활성화 요청	건의일	18. 11. 15
건의처	울산광역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의 SOC 투자 부진 등 지속되는 지역건설공사 발주 물량 부족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내 대형 건설공사의 외지 종합건설업체 수주로 인해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공사 참여에 배제되고 있는 실정</li> <li>○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역 전문건설업체 60% 이상 하도급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 전문 건설업체는 원도급사의 '협력업체 미등록', '지역업체의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 등으로 인해 하도급 참여(25% 대)가 저조</li> </ul> <p>*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 제3조, 제3조의2, 제17조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와 관련하여 시청 건설도로과 내 '하도급 관리 T/F팀'을 조직,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하도급 실태조사, 시공사 본사 방문, 대형건설공사 관계자 간담회 등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독려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나 짧은 시간 내 원도급사의 인식 개선 및 고착화된 원·하도급 건설문화를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임</li> </ul>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경기 침체로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경제의 불황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및 지역공단 내 발주공사의 지역 전문건설업체 수주 협조'와 '하도급 관리 T/F팀을 정식 조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li> </ul> <p>*현재 건설도로과 기술관리계에서 하도급관리 전담 中</p>			
건의결과				
반영	부분반영	검토중	미반영	건의보류
		●		

# **2018 기업규제애로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2019년 3월 15일 발행**

- 발행인 : 전영도
- 편집인 : 차의환
- 발행처 : 울산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97

문의전화 : (052)228-3070~4

**《비 매 품》**